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 안 번 호	3091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사무로, 위탁 기간이 2025.12.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
- 나. 체육 분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·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
- 운영규모 : 24개 종목 26개팀 189명

나. 위탁근거 및 추진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
 -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9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 -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('25.6.9.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2.1.~2004.12. (3년), 서울시체육회
- 2차 : 2005.1.~2007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3차 : 2008.1.~2010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4차 : 2011.1.~2013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5차 : 2014.1.~2017. 3. (3년 3개월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6차 : 2017.4.~2019.12. (2년 9개월, 재위탁), 서울시체육회
- 7차 : 2020.1.~2022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8차 : 2023.1.~2025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

- '25. 6. 9.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
(행정1부시장 제96호)
- '25. 7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80.21점)
※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,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
- '25. 7. 14. 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적정, 조직담당관)

다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('26.1월 ~ '28.12월)
- 위탁유형 : 사무형
- 위탁방법 : 재위탁(공모)
- 위탁목적
 -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,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

- 기관선정 :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시 체육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
- 위탁업무
 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
 -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생활관의 운영
 - 우수선수 확보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
 -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
 -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- 소요예산(안) : 20,547,241천원('25년 기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...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...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 중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동인(☎2133-2687)